

의안번호	2124996
의 퇴 인	진선미 의원
회 답 일	2023. 7. 6.
추 계 번 호	23F28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수불능 해외자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9조의 2 신설 (해외자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인정되는 해외자회사 대여금 등을 제각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 (대상)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 (해외자회사) ① 모회사가 90% 이상 출자 ② 직전 10년간 완전자본잠식*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0 - (대상 채권) ① 5년 이상 미회수된 대여금 및 미수이자 ② 2 이상의 회계법인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재무상태표에서 제각한 것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조세 지출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9조의 2 신설 (해외자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불확실한 미래 시점에 인식될 손금을 현재 시점으로 앞당기는 효과가 존재함

- 현행 세법상, 해외자회사 법인이 파산·청산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등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현지 제도 등에 따라 현재로서는 사실상 청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법인을 청산하면 해당 채권은 언젠가 손금으로 인식될 금액

- 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 대여금 등 규모를 파악하고, 해외자회사 청산 시점을 고려하여 손금의 조기인식에 따른 시간가치를 추정해야 함

$$\text{손금 조기인식에 따른 시간가치} = \sum \text{회수불능 대여금} \times \left(\frac{1}{r^a} - \frac{1}{r^b} \right)$$

r = 연 이자율

a = 동 특례 손금산입 시점과 현재 사이의 기간

b = 청산 등을 통한 대손금 인식 시점과 현재 사이의 기간

- 그러나 해외자회사가 어느 시점에 청산하여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식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참고로 2023년 3월 말 기준, 해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 자본잠식 상태인 사우디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 보유 현황 (2023. 3. 기준)
(단위: 억원)

	대여금 ¹⁾	기타 채권	계
A 사	12,009	39	12,048
B 사	6,015	3,490	9,505
C 사	2,868	1,849	4,717
D 사	125,683	—	125,683
합 계	146,575	5,378	151,953

주: 자본잠식(총자산 - 총부채 ≤ 0) 상태인 해외자회사를 대상으로 파악

1)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포함

자료: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23년 1분기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회수불능 해외자회사 채권 등에 대한 평가손실 손금산입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837	nororand@assembly.go.kr